

#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회비규정

1993. 04. 01 제 정  
2005. 05. 13 개 정  
2006. 05. 12 개 정  
2006. 10. 20 개 정  
2010. 06. 11 개 정  
2016. 09. 01 개 정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6조에 따라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회비 종류)

- ① 입 회 비 : 10,000원
- ② 정 회 원 : 50,000원
- ③ 학생회원 : 30,000원
- ④ 구독회원 : 100,000원
- ⑤ 종신회원 : 1,000,000원
- ⑥ 단체회원 : 1구좌 당 500,000원으로 하고 1구좌 이상으로 한다.

## 제3조 (임원 및 단체회원 연회비)

본 회의 임원 및 단체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회 장 : 1,000,000원
  - ② 부회장 : 300,000원
  - ③ 감사, 운영이사 및 이사 : 100,000원(종신회원의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)
- 단체회원은 1구좌당 5명 이내의 해당 단체 소속 임직원에 대해 연회비를 면제한다.

## 제4조 (회비미납)

본 회의 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회지를 발송하지 않는다.

## 제5조 (논문투고시 회비납부 의무)

논문투고시 논문의 주저자(제1저자)와 교신저자는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

## 제6조 (회비의 징수 및 관리)

회비의 징수와 관리에 관한 업무는 회장이 관장한다.

## 제7조 (규정의 개정)

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되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.